

보도시점 2026. 7. 31.(금) 조간 < 2026. 7. 30.(목) 12:00 >

상생협력법 위반의심기업 508개사 확인... 479개사 자진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92억 원 지급

- 행정지도에도 자진 시정하지 않은 최종 29개사에 개선 요구 등 행정조치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 508개사를 확인했다. 현장조사를 담당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수탁기업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위탁기업에 자진시정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479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총 92억 원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다.

다만, 중기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17개사에 대해서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중기부는 향후 개선요구에도 불응하는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명과 법 위반 사실을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 및 조치를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약정서 및 물품수령증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12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중 약정서를 적기에 발급하지 않은 11개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서면 약정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기업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한 수탁·위탁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상생협력정책관 불공정거래개선과	책임자	과 장	이화정	(044-204-7940)
		담당자	사무관	박근모	(044-204-7946)
			주무관	정두리	(044-204-7918)



☐ 조사목적

-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준수 여부를 조사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 유도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조사대상 :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 조사내용 :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 (납품대금) 납품대금 지급 및 결제기일 준수, 납품대금 지연이자* 지급 여부 등 거래현황

* 물품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상생협력법 제22조)

- (준수사항) 약정서 발급, 부당 감액 금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약정서 발급(상생협력법 제21조), 부당감액 금지 등 준수사항(상생협력법 제25조)

☐ 조치결과

- 위반기업에 대한 개선요구 및 교육명령(29개사)

- (개선요구·별점*) 납품대금 등 미지급 위반 17개사,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발급 의무 위반 12개사

* 개선 요구 위반행위 유형당 2점 부과

- (과태료) 서면발급 의무 중 약정서 발급 의무 위반 11개사

- (교육명령) 별점 2점 이상 부과받은 26개사

☐ 향후 계획

- (공표 및 공정위 조치요구)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반에 대한 개선요구 최종 미이행 기업은 공표 및 공정위 조치요구